

# 환경법규

환경부 공고 제2014-627호

## 「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」 입법예고

2014년 11월 3일

환경부장관

### 1. 개정이유

녹지지역 공장소음기준 합리화를 위하여 공장 주변지역 토지이용실태 전수조사, 현장소음도 조사, 외국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, 녹지지역 공장소음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녹지지역 공장소음기준을 5dB 완화[별표5 제1호 가목]

- 1) **현행**(낮 50dB, 저녁 45dB, 밤 40dB) ⇒ **개정**(낮 55dB, 저녁 50dB, 밤 45dB)
- 2) 다만, 공장인근(200m이내)에 정온시설(전용주거지역·취락지구 등)이 위치한 경우 현행 “가목”의 기준(낮 50dB, 저녁 45dB, 밤 40dB) 적용

나. 작업시간 단축시 부여하던 보정치를 세분화, 75% 구간에 대해 3dB 보정 추가[별표5 비교5호]

작업시간	12.5% 미만	12.5~25% 미만	25~50%미만	50~75% 미만(신설)
보정치	+15dB	+10dB	+5dB	+3dB

\* 기준시간대: 낮은 8시간, 저녁은 4시간, 밤은 2시간

다. “비교”란에 산재된 일부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을 “본문 표”로 일원화

- 1) 종합병원, 학교, 공공도서관 등[별표5 비교6호 나목→ 별표5 가목 제4)호]
- 2) 산업단지[별표5 비교6호→ 별표5 마목 제2)호]

라.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을 5대 유형(목적)별로 명확히 구분[별표5]

- 1) 주거환경의 특별관리, 주거환경의 일반관리, 농림수산업적 생산, 상업적 용도, 공업적 용도로 목적을 명시

환경부공고 제2014-614호

#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

2014년 10월 28일  
환경부장관

## 1. 제안이유

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배출량과 관계없이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설치허가기준을 현실화하고,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관한 규제 또한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는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설치제한 지역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폐수배출시설 설치(변경)허가 및 설치신고 대상 변경(안 제31조제1항제1호·제6호, 제2항제3호, 제3항제1호)

폐수배출시설 설치(변경)허가 및 설치신고 대상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로 합리화함.

나.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시설 변경(안 제32조제3호·제4호)

「수도법」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및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등의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로 규정함.